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1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26,663,280	12,799,898
일반회계	298,401,902	8,952,057
특별회계	128,261,378	3,847,841
기타특별회계	128,261,378	3,847,841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117,162	33,515
주차장특별회계	75,424	2,263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819,612	54,588
주택사업특별회계	88,345	2,65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9,293,890	3,278,817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03,997	6,120
치수사업특별회계	1,465,342	43,96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502,262	15,068
기반시설특별회계	85,264	2,558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	13,610,080	408,30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2011년도 사고이월사업은 별첨 "사고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77,757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 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 할 수 있다.